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의 소규모 변경 등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 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5.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6. 정원의 변경
7. 법 제1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면적의 변경
8.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별표 3 제1호가목3) 설치기준의 기준란의 마) 단서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한정하여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7) 강의실의 기준란의 다) 중 “흑판면”을 “칠판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 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u>
<u><신 설></u>	<u>5.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 하 면적의 증감</u>
<u><신 설></u>	<u>6. 정원의 변경</u>
<u><신 설></u>	<u>7. 법 제17조에 따른 수련시설 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면적의 변경</u>
<u><신 설></u>	<u>8.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u>